##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34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안도걸 · 김영진 · 조인철

양부남 • 한병도 • 김종민

전진숙 · 민형배 · 박민규

서삼석 · 김문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2024년 6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행 일몰기한 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완료하기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실효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 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
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u>2026</u>	감면) ① <u>2030</u>
<u>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업 등	<u>년 12월 31일</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	
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	
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	
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